

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(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용)

※ EcoAS(www.ecoas.or.kr)에서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

제출인	상 호	전화번호
	주 소	법인등록번호
	대표자 성명	사업자등록번호

재사용 및 재활용결과

(단위 :kg, 대)

차종	입고량 (kg, 대수)	재활용결과			폐가스류 회수·공급		④원료 판매		
		계	① 재사용량	② 재활용량	③재활용 방법 및 기준	업체명	중량	업체명	중량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. 폐자동차를 재사용·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.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.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·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작성요령

- 재사용량은 폐자동차를 해체 후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을 판매(수출을 포함합니다)한 양을 기재(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 첨부)합니다
- 폐윤활유, 타이어, 배터리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적정업체에 인계한 양,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재활용한 양, 파쇄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강업체에 공급한 양 등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제외한 양을 기재합니다.
- 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7에서 정한 재활용방법과 기준 가운데 해당하는 방법 및 기준을 기재합니다.
- 파쇄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기재합니다.

처리절차

보고서 작성 신청인	→	접수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→	검토 (적정 여부 확인)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→	결재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	→	기후에너지환경부 통보 처리기관 (국토교통부)
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